

정 관

사단법인 무무키
mumuki foundation

※ 사단법인 무무키 정관은 법무부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<표준정관>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, 총 45조로 구성되어 있음. 여기에 제시된 사항들은 정관의 주요 내용들을 간추려 정리한 것임.

□ **(명칭)** 본 법인은 "사단법인 무무키"라 한다(이하 "본회"라 함).

□ **(소재지)**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(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5길 7, 503호).

□ **(목적)** 본회는 서울지역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·문화 사업, 진로 멘토링 및 맞춤형 사례 관리를 수행하고,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의 자립 지원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**(사업)** 본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- 서울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도서관 동행 및 정서 지원사업
- 서울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의 진로 상담 등 멘토링 사업
- 서울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 기자재 지원사업
- 서울지역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의 AI 교육 지원사업

□ **(회원의 자격)**

-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
- 회원은 정회원, 단체회원,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
□ **(회원의 권리)**

- **정회원 및 단체회원:** 임원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지며,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
- **후원회원:** 재정적인 후원을 하면서, 모든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, 총회에서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.

□ **(회원의 의무)**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-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-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정회원 및 단체회원의 회비 납부
- 후원회원의 후원금(제 부담금) 납부

□ **(회원의 탈퇴)**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□ **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이사 5인 이상(이사장 1명, 이사 4명이상)
- 감사 1인

□ **(임원의 선임)**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□ **(임원의 해임)** 임원이 다음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-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임원 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□ **(임원의 임기)**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□ **(총회의 구성)**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
□ **(구분 및 소집)**

-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□ **(총회의 기능)**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사업계획의 승인
-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
□ **(이사의 의결사항)**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-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
-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- **(재산의 구분)**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 - 기본재산: 설립 시에 출연한 재산(3천만원)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 - 운영재산 :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(현재 출연금 2천만원).
- **(수입금)**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**(회계의 공개)**
 -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 -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3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개한다(홈페이지 추후 제작 예정).
- **(사무국)**
 -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-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-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**(정관변경)**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**(법인 해산)**
 -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-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- **(시행일)**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**(설립자의 기명날인)**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, 발기인 10명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

2026년 9월 5일

발기인 대표 남영민 외
9인의 발기인 전원 인감 날인